

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

기관명	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		
교육구분	성희롱 방지조치	출력일	2022-02-17

▣ 성희롱 방지조치

평가항목	시행여부	비고
고충 담당자(상담원) 지정 및 전문·심화교육 이수	○	- 총 2인 이상(남, 녀 각 1인 이상 지정) ※ 어느 한 성()이 5인 미만일 경우 남·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※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-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 * 가급적 기관 고충상담원 1/2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권장 *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('19~'21년 교육 이수)를 이수자로 인정 ※ 고충상담원 심화교육 이수 포함
고충 상담창구 설치 (사이버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)	○	- 독립된 공간의 상담창구 설치 권장 ※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- '사이버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' 설치 포함 의무화 ※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
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	○	-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

▣ 성폭력 예방조치

평가항목	시행여부	비고
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	○	-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※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'16.5 개정, '16.11 시행)

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

기관명	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		
교육구분	성희롱 예방교육	출력일	2022-02-17

***부진기관 기준**

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직원 참여율 70%미만 ③기관장 교육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70% 미만

-교육 참여율=1회 이상 교육 받은 인원/ 총 인원*100

※ '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'이 성희롱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언론 등에 공표 (양성평등기본법 개정 '21.10.21일 시행)

※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

평가항목	세부배점	획득점수
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	기본계획 미수립(0점)	수립 / 10점
	기본계획 수립(10점)	
기관장 참여	미이수(0점) *부진기관	이수 / 35점
	이수(10점)	
고위직 참여율	50%미만(0) *부진기관	[고위직없음]
	50~70%미만(5점) *부진기관	
	70~90%미만(15점)	
	90%이상(25점)	
직원 참여율	50%미만(0점) *부진기관	87% / 25점
	50%~60%미만(10점) *부진기관	
	60%~70%미만(15점) *부진기관	
	70%~80%미만(20점)	
	80%~90%미만(25점)	
	90%이상(30점)	
교육방법	시청각교육 등 기타(10점)	전문강사교육 / 20점
	사이버교육(15점)	
	내부직원교육(10점)	
	일반강사교육(15점)	
	전문강사교육(20점)	
신규자 참여율 ※신규자,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	70% 미만(0점)	[신규자 없음] / 3점
	70% 이상(3점)	
비정규직 참여율	70% 미만(0점)	0% / 0점
	70% 이상(2점)	
가점1.기관 내 사례토론, 세미나 등 교육	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(5점)	미실시 / 0점
가점2.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	사용(2점)	미사용 / 0점
가점3.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	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(5점)	미제출 / 0점
가점4.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	교육결과보고서 제출(8점)	미제출 / 0점
합 계	100점(가점 시 120점)	93점

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

기관명	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		
교육구분	성매매 예방교육	출력일	2022-02-17

***부진기관 기준**

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직원 참여율 70%미만 ③기관장 교육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70% 미만

-교육 참여율=1회 이상 교육 받은 인원/ 총 인원*100

※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

평가항목	세부배점	획득점수
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	기본계획 미수립(0점)	수립 / 10점
	기본계획 수립(10점)	
기관장 참여	미이수(0점) *부진기관	이수 / 35점
	이수(10점)	
고위직 참여율	50%미만(0) *부진기관	[고위직없음]
	50~70%미만(5점) *부진기관	
	70~90%미만(15점)	
	90%이상(25점)	
직원 참여율	50%미만(0점) *부진기관	87% / 25점
	50%~60%미만(10점) *부진기관	
	60%~70%미만(15점) *부진기관	
	70%~80%미만(20점)	
	80%~90%미만(25점)	
	90%이상(30점)	
교육방법	시청각교육 등 기타(10점)	전문강사교육 / 20점
	사이버교육(15점)	
	내부직원교육(10점)	
	일반강사교육(15점)	
	전문강사교육(20점)	
신규자 참여율 ※신규자,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	70% 미만(0점)	[신규자 없음] / 3점
	70% 이상(3점)	
비정규직 참여율	70% 미만(0점)	100% / 2점
	70% 이상(2점)	
가점1.기관 내 사례토론, 세미나 등 교육	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(5점)	미실시 / 0점
가점2.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	사용(2점)	미사용 / 0점
가점3.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	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(5점)	미제출 / 0점
가점4.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	교육결과보고서 제출(8점)	미제출 / 0점
합 계	100점(가점 시 120점)	95점

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

기관명	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		
교육구분	성폭력 예방교육	출력일	2022-02-17

***부진기관 기준**

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직원 참여율 70%미만 ③기관장 교육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70% 미만

-교육 참여율=1회 이상 교육 받은 인원/ 총 인원*100

※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

평가항목	세부배점	획득점수
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	기본계획 미수립(0점)	수립 / 10점
	기본계획 수립(10점)	
기관장 참여	미이수(0점) *부진기관	이수 / 35점
	이수(10점)	
고위직 참여율	50%미만(0) *부진기관	[고위직없음]
	50~70%미만(5점) *부진기관	
	70~90%미만(15점)	
	90%이상(25점)	
직원 참여율	50%미만(0점) *부진기관	87% / 25점
	50%~60%미만(10점) *부진기관	
	60%~70%미만(15점) *부진기관	
	70%~80%미만(20점)	
	80%~90%미만(25점)	
	90%이상(30점)	
교육방법	시청각교육 등 기타(10점)	전문강사교육 / 20점
	사이버교육(15점)	
	내부직원교육(10점)	
	일반강사교육(15점)	
	전문강사교육(20점)	
신규자 참여율 ※신규자,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	70% 미만(0점)	[신규자 없음] / 3점
	70% 이상(3점)	
비정규직 참여율	70% 미만(0점)	100% / 2점
	70% 이상(2점)	
가점1.기관 내 사례토론, 세미나 등 교육	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(5점)	미실시 / 0점
가점2.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	사용(2점)	미사용 / 0점
가점3.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	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(5점)	미제출 / 0점
가점4.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	교육결과보고서 제출(8점)	미제출 / 0점
합 계	100점(가점 시 120점)	95점

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

기관명	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		
교육구분	가정폭력 예방교육	출력일	2022-02-17

***부진기관 기준**

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직원 참여율 70%미만 ③기관장 교육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70% 미만

-교육 참여율=1회 이상 교육 받은 인원/ 총 인원*100

※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

평가항목	세부배점	획득점수
가정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	기본계획 미수립(0점)	수립 / 10점
	기본계획 수립(10점)	
기관장 참여	미이수(0점) *부진기관	이수 / 35점
	이수(10점)	
고위직 참여율	50%미만(0) *부진기관	[고위직없음]
	50~70%미만(5점) *부진기관	
	70~90%미만(15점)	
	90%이상(25점)	
직원 참여율	50%미만(0점) *부진기관	87% / 25점
	50%~60%미만(10점) *부진기관	
	60%~70%미만(15점) *부진기관	
	70%~80%미만(20점)	
	80%~90%미만(25점)	
	90%이상(30점)	
교육방법	시청각교육 등 기타(10점)	전문강사교육 / 20점
	사이버교육(15점)	
	내부직원교육(10점)	
	일반강사교육(15점)	
	전문강사교육(20점)	
신규자 참여율 ※신규자,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	70% 미만(0점)	[신규자 없음] / 3점
	70% 이상(3점)	
비정규직 참여율	70% 미만(0점)	100% / 2점
	70% 이상(2점)	
가점1.기관 내 사례토론, 세미나 등 교육	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(5점)	미실시 / 0점
가점2.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	사용(2점)	미사용 / 0점
가점3.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	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(5점)	미제출 / 0점
가점4.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	교육결과보고서 제출(8점)	미제출 / 0점
합 계	100점(가점 시 120점)	95점